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8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
발의자 : 남진삼 의장

찬성자 : 박춘희, 김광성,  
김성기, 심현정,  
이은미, 이창열 의원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 
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활동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발의 및 제출된 **조례안**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 
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 
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활 동 계 획

## 1. 활동목적

-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## 2. 심사안전

- 평창군 조례안 및 평창군의회 규칙안 등

## 3. 활동기간

-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4. 구 성

- 박춘희 의원, 김광성 의원, 김성기 의원, 심현정 의원,  
이은미 의원, 이창열 의원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